

루리 위키 >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새마을금고·신협·농협 조합원 예탁금: 이자 세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새마을금고·신협·농협 조합원 예탁금: 이자 세금 혜택과 예금자보호

루리

새마을금고·신협·농협 같은 상호금융 조합의 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(<https://www.law.go.kr/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89조의3>)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, 2026년부터 가입 시기와 대상에 따라 비과세가 아니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.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업권의 자체 기금이 맡아요.

새마을금고·신협·농협 같은 상호금융 조합의 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(<https://www.law.go.kr/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89조의3>)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, 2026년부터 가입 시기와 대상에 따라 비과세가 아니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.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업권의 자체 기금이 맡아요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예금보험공사, 새마을금고중앙회, 신협중앙회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대상자 판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**공식 확인**하세요. 예시는 설명용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 한눈에 정리

항목	내용
근거	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89조의3)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
대상	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, 1인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
제1항 가입 기한	조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돼요
이후 세율	2026년 가입분 5%, 2027년 이후 가입분 9% (조문 기준)
제2항	조문의 특정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 ~2028년 12월 31일 가입하면 이자에 소득세 비과세
이후 세율	2029년 가입분 5%, 2030년 이후 9%
종합과세	이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

제2항에서 말하는 「특정 거주자」의 소득 기준은 조문이 다른 조항을 가리키는 방식이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. 해당 여부는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2 2. 조합마다 따로 보는 것

- 새마을금고, 신협, 농협은 각각 다른 법에 따른 조합이에요.
- 조합원·준조합원 자격과 출자금 기준은 조합에 문의하세요.
- 조합원 예탁금 혜택은 출자금과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.

3 3. 확인 순서

- 가입하려는 조합의 조합원(또는 준조합원)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요.
- 가입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정해요. 연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.
-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제89조의3과 시행령을 읽어요.
- 본인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대상인지 조합 창구나 국세청에 문의해요.
- 모든 조합 예탁금 합계가 1인당 3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요.

가상 예시: B씨가 여러 조합에 예탁금을 나눠 맡긴다면 한도는 조합별이 아니라 합산으로 따진다는 점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. 조문은 「1명당 3천만원 이하」로 표시돼요.

4 4. 예금자보호 구조

- 예금보험공사 FAQ에 따르면 농·수협 지역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아요.
-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한다고 안내해요.
-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한다고 안내해요.
-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올라갔다고 안내했어요.
- 출자금의 자본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새마을금고가 안내해요.
- 개별 신협마다 보호한도가 적용되고, 같은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산된다고 각 중앙회가 설명해요. 농협의 세부 기금 구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5 5. 혼한 실수

- 비과세가 모든 조합원에게 계속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.
- 가입 연도에 따라 세율이 바뀐다는 점을 놓쳐요.
- 출자금도 예금처럼 보호된다고 오해해요.
- 예금보험공사 보호를 기대하고 가입해요.

6 체크리스트

- 조합원 자격과 가입 요건을 확인했다
- 가입 시점의 제89조의3 현행 조문을 읽었다
- 1인당 3천만원 한도를 합산해서 계산했다
- 보호 기금(중앙회 기금)과 보호한도를 확인했다
- 출자금과 예탁금을 구분했다

7 용어 정리

- **조합등예탁금**: 조합원 등이 조합에 맡기는 예금이에요.
- **저율과세**: 일반 이자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식이에요.
- **출자금**: 조합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.
- **예금자보호준비금·기금**: 조합이 파산할 때 예금을 지급하려고 중앙회가 쌓아 두는 재원이예요.

8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89조의3>):
<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awLinkInfo.do?chrClsCd=010202&lsId=001584&lsJoLnkSeq=1000665273&print=print> (<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awLinkInfo.do?chrClsCd=010202&lsId=001584&lsJoLnkSeq=1000665273&print=print>)
- 예금보험공사 FAQ: <https://www.kdic.or.kr/sp/dpstrprot/ProtSystFaq/selectScrn.do> (<https://www.kdic.or.kr/sp/dpstrprot/ProtSystFaq/selectScrn.do>)
-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: <https://www.kfcc.co.kr/cc/depositorProtection.do> (<https://www.kfcc.co.kr/cc/depositorProtection.do>)
-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: <https://www.cu.co.kr/cu/cm/cntnts/cntntsView.do?mi=100091&cntntsId=1050> (<https://www.cu.co.kr/cu/cm/cntnts/cntntsView.do?mi=100091&cntntsId=1050>)
-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보도자료: <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4974> (<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4974>)
- 제2항 대상자 소득 기준, 농협 기금 세부: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

Facebook

💬 다른 고민 보기 · 🎯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9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